



# 백양골 소식

2020년  
7월

■ 제505호 ■

발행인:장성군수/ 편집인:총무과장/ 제작:총무과/ ☎ 390-7239/ FAX 390-7579/ jangseong.go.kr/ 2020.07.24.(금)

##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!



### 물 자주 마시기

-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
- \*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



### 시원하게 지내기

- 샤워 자주 하기
-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(양산, 모자)
-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



###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

- 가장 더운 시간대 (낮12시~오후 5시)에는 휴식하기
- \*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,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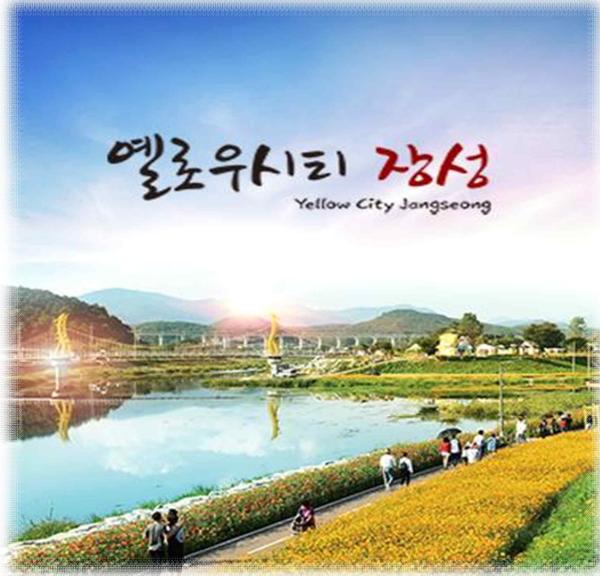


### 매일 기온 확인하기

- 매일 기온, 폭염특보 등을 확인하여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하기

#### <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열질환 예방하기>

- 실외에서 사람 간 2m 거리두기 가능하다면 마스크 벗기
- 냉방기구 사용할 때 최소 2시간 마다 환기하기
- \* 바람의 세기를 낮추고,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기



**[일반행정 소식] ----- 1**

1. 7월 정기분 재산세(주택, 건축물) 납부
2.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
3. 장성호 수변길 「상품권 교환제」 운영 일정 변경
4.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행
5. 불법 주·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!

**[보건·복지 소식] ----- 6**

1.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2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& 영양플러스사업
3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4. 임산부·아동 건강관리 지원  
& 임산부 유축기 무료 대여
5.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6. 치매관리사업 안내

**[농·축산 소식] ----- 12**

1.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
2.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
3. 동물 학대·방치행위 금지 및 사육 관리 철저
4.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

**[국·도정 소식] ----- 16**

1. 코로나19 예방 물놀이 안전수칙
2. 잘못된 마스크 착용, 안돼요!



##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(주택, 건축물) 납부

### □ 납세자

- 2020. 6. 1. 기준 장성군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

### □ 과세대상

- 주택(주택 부속토지), 건축물, 선박

### □ 납부기간 : 2020. 7. 16. ~ 7. 31.

#### ※ 재산세 (주택분)

- 연세액 20만원 이하 : 7월 일괄 부과 · 징수
- 연세액 20만원 초과 : 7월, 9월 1/2씩 부과 · 징수

#### ※ 재산세 분납

- 재산세 재산분 250만원 초과시 연장기간 2개월내 분납 신청 가능

### □ 납부방법

- 방 문 : 시중은행, 농협, 우체국 등의 창구
- 인 터 넷 : 위 택 스 (<http://www.wetax.go.kr>)
- 가상계좌 : 가상계좌(농협)로 계좌이체 납부 (고지서 참조)
- 신용카드 : 모든 신용카드 가능

### □ 미납시 가산금

- 3% 가산금 추가
  - 본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 2개월부터 매월 1.2% 증가산금 추가

문의처 ☎ 390-7821 (재무과 부과팀)

##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

### □ 시행개요

- 시행기간 : 2020. 8. 5 ~ 2022. 8. 4.(2년간) 한시적
  - 적용대상
    - 읍·면지역 : 토지 및 건물
    -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: 농지 및 임야
    - 광역시,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 : 1988. 1. 1 이후 직할시·광역시, 그 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
  - 적용범위
    -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,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
- ※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**

### □ 확인서 발급신청

- 소유권 이전절차
  -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(5명 이상) 첨부 → 군청 접수 → 현장조사 및 공고(2개월) → 확인서 발급 → 신청자 등기부 정리

문의처 ☎ 390-7265 (민원봉사과 지적팀)

## 장성호 수변길 「상품권 교환제」 운영 일정 변경

### □ 상품권 교환제란?

- 장성호 수변길을 찾은 관광객에게 **상품권 교환소**에서 **3000원을 내면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**해주는 제도

### □ 운영 방법

- 운영시기 : **2020. 8월중** \*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로 변경
- 교환금액 : 3,000원(장성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)
- 교환대상 : 관외 거주 방문객

**\* 무료입장(신분증 제시 필수)**

- **장성군민**, 만 65세 이상 노인, 만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군인(의무경찰 포함)

- 교 환 소 : 장성호 제방 위(관리소 뒤 주차장) \* **주말·공휴일만 운영**
- 운영시간 : 3월~10월 09:00~18:00 / 11월~2월 09:00~17:00

문의처 ☎ 390-7254 (문화관광과 장성호관광지관리팀)



## 대중교통 탑승객

# 마스크착용 의무화시행

- 마스크 미착용 시 농촌버스,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제한
-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, 최대 300만원 벌금 및 방역비용 청구



**대중교통 탑승 시  
마스크 착용은  
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!**





# 불법 주·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!

불법 주·정차를 주인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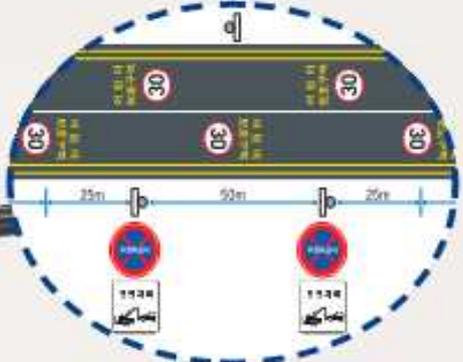
**단속요건 1분이상**



**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**

신고대상 구간

주·정차 금지 안내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(과태료 8~9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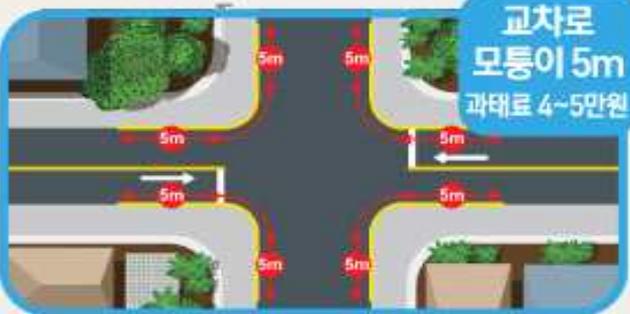


**주·정차 금지 안전표지**  
(금지 표지판/노면표시)



**소화전 주변 5m**  
과태료 8~9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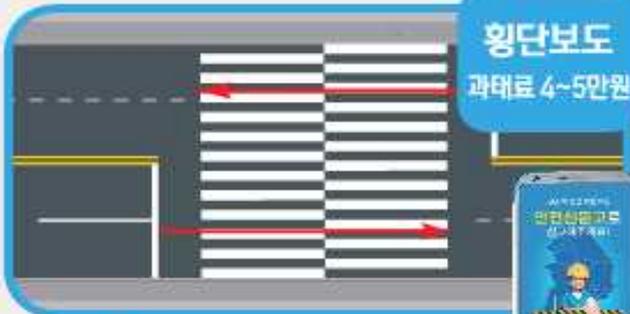
주·정차금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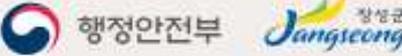
**교차로 모퉁이 5m**  
과태료 4~5만원



**버스정류소 10m**  
과태료 4~5만원



**횡단보도**  
과태료 4~5만원





##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
만 2세(0~24개월) 미만 영아가 있는 다자녀(2인이상) 가정에 기저귀·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.

### □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
#### ○ 지원대상

##### - 기저귀
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의 영아
- 기준중위소득80%이하 장애인 가구의 영아
- 기준중위소득80%이하 다자녀(2인이상) 가구의 영아

##### - 조제분유(기저귀 지원대상 중)

- 산모가 사망·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-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보호·한부모 등

【2020년 기준중위소득 80% 판정기준】

(단위:원)

가구원수	소득기준 (80%)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
2인	2,394,000	79,924	45,003	80,076
3인	3,096,000	104,090	95,023	105,268
4인	3,799,000	126,909	118,159	128,407
5인	4,502,000	151,927	150,605	153,994

○ 지원내용 : 기저귀) 월 64,000원, 조제분유) 월 86,000원

○ 신청기간 : 영아 출생 후(출생신고) ~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

#### ○ 구비서류
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 자격 보유 증명 서류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) 1부
- 조제분유 지원 대상 증빙 서류 1부

○ 신청접수 :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
문의처 ☎ 390-8363 (보건소 건강생활팀)

##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- 기 간 : 2020. 1. 2. ~ 12. 31.
- 대 상 : 관내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- 지원내용 : 인공수정, 체외수정(신선, 동결배아) 시술비 일부·전액본인부담금의 90%

구 분		지 원 상 한 액		
적용대상 연령(여성 기준)		만 44세 이하		만 45세 이상
체외수정	신선배아	1 ~ 4회	최대 110만원	최대 90만원
		5 ~ 7회	최대 90만원	
	동결배아	1 ~ 3회	최대 50만원	최대 40만원
		4 ~ 5회	최대 40만원	
인공수정		1 ~ 3회	최대 30만원	최대 20만원
		4 ~ 5회	최대 20만원	

- ※ 인공수정 : 정자를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
- ※ 체외수정 :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여 시험관에서 수정 시킨 후, 자궁에 이식

문의처 ☎ 390-8363 (보건소 건강생활팀)

## 영양플러스사업 안내

### □ 저소득층 임산부·영유아 대상 보충식품 지원

- 대 상 : 임산부, 출산·수유부, 영유아(생후 72개월 미만)
  - 기 준 :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
  - ※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
- 내 용 : 매월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
  - 기 간 : 2020. 1. ~ 2020. 12. 31.
  - 배 송 : 월 1 ~ 2회 각 대상가정에 직접 배송
  - 식 품 : 식품패키지에 따라 분유, 쌀, 감자, 달걀, 우유 등
- 신청접수 :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
문의처 ☎ 390-8323 (보건소 건강생활팀)

##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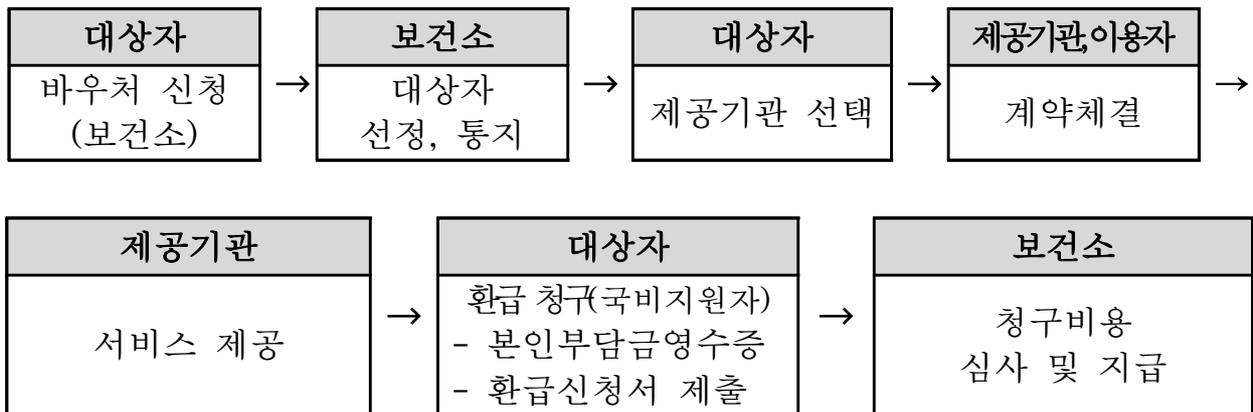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립니다.

- 대상 : 관내 출산 가정
-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, 가사 지원 등
- 신청기간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지원범위

태아유형	출산순위	소득유형 (기준중위소득)	표준형		비고
			정부지원금	본인부담금	
단태아	첫째아	50%이하	870,000원	290,000원	국비지원
		100%이하	766,000원	394,000원	
		120%이하	609,000원	551,000원	
		국비지원 제외자	609,000원	551,000원	군비지원

※ 태아유형, 출산 순위, 소득 유형,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

### ○ 지원절차



※ 공공산후 조리원 및 해산급여 중복지원 불가

### ○ 접수서류

- 공통 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
- 추가 : 가족관계증명서(주소 상이한 경우), 휴직 증명서(휴직 기간, 유·무급 표시)

문의처 ☎ 390-8363 (보건소 건강생활팀)

## 임산부·아동 건강관리 지원

### □ 임산부

- 대 상 : 보건소·보건지소 임부 등록자
- 내 용
  - 엽산제 : 임신일로부터 ~ 임신 12주까지(1인당 최대2개월분)
  - 철분제 : 임신16주 이상 ~ 분만전까지(1인당 최대5개월분)
  - 유산균 : 임신16주 이상 (1인당 1개월분)
  - 임부 트살 크림 : 1인당 1회 지원
- ※ 타기관 중복 지원 제외
- ‘임산부 배려’ 엠블럼 제공
- 지 참 물 : 신분증, 산모수첩
- 접수장소 :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및 보건지소

### □ 영·유아

- 대 상 : 24개월 이상 ~ 만 6세 미만 영·유아
- 내 용 : 어린이 영양제 1인당 연간 1회 지원
- 접수장소 :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및 보건지소

문의처 ☎ 390-8363 (보건소 건강생활팀)

## 임산부 유축기 무료 대여

- 대 상 : 관내 등록 임산부
- 기 간 : 4주 대여(3주 연장 가능)
- 지 참 물 : 신분증, 출생증명서
- 접수장소 :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
문의처 ☎ 390-8363 (보건소 건강생활팀)

##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

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**고위험 임신부 입원치료비**를 지원해드립니다.

### □ 지원대상

- 고위험 임신질환\*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

#### \* 고위험 임신질환

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 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 내 성장 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

### □ 지원내용

-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(상급병실입원료, 환자특식 제외)에 해당하는 금액의 90% 지원(10%는 개인 부담 적용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% 지원

### □ 신청기간

-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

### □ 구비서류

- 공통 : 신청인 신분증,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의사진단서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, 입·퇴원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출생증명서, 통장사본(지원대상자 명의)
- 추가 : 가족관계증명서(주소 상이한 경우), 휴직 증명서(휴직기간, 유·무급 표시, 유급 시 급여명세서 추가)
- 그 외 소득 증빙자료나 가구원 수 확인 자료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해 열람·제출

### □ 신청접수

-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
문의처 ☎ 390-8363 (보건소 건강생활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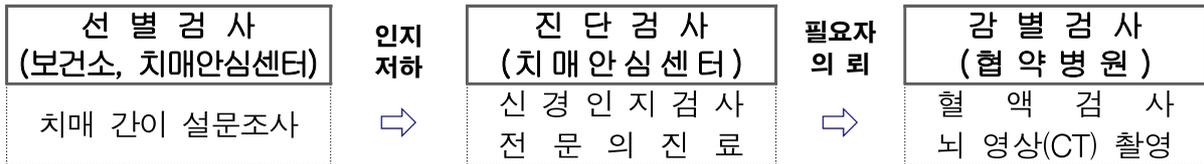
## 치매관리사업 안내

### □ 치매안심센터 이전

- 위 치 : 장성읍 성산5길 17 / 청룡마을
- 규 모 : 건축 연면적 495㎡(단층) / 대지 2,334㎡
  - 사무실, 건강증진실, 프로그램실, 진료실, 상담실, 가족카페 등
- 운영내용 : 치매조기검진, 치매환자등록·관리, 치료비지원, 조호물품지원, 치매환자 쉼터, 치매예방교실, 인지강화교실 운영 등

### □ 치매조기검진사업

- 기 간 : 연중
- 대 상 : 만 60세 이상 관내 주민
- 장 소 : 보건(지)소, 치매안심센터, 기관·단체, 경로당 등
- 내 용



※ 감별검사비 소득기준 제한 없이 확대 지원 : 최대 8만원까지 검사비 지원

### □ 치매치료비 지원

- 기 간 : 연중
- 대 상 :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 복용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- 내 용 : 치매 진료비·약제비 월 3만원 내 실비 지원
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약처방전, 통장사본
  - ※ 신청 → 진료 → 건강보험공단 심사(2~6개월 소요) → 지원(신청 통장)

### □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
- 기 간 : 연중
- 대 상 : 관내 거주하는 치매 등록된 사람
- 방 법 : 환자 및 보호자 치매안심센터·보건지소 방문 수령
  - ※ 장성읍, 황룡면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방문 수령
- 내 용 : 영양제, 물티슈, 기저귀, 방수시트 등
- 지원횟수 : 분기 또는 반기별 지원

문의처 ☎ 390-7161 (보건소 치매예방팀)

##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

- 신청기간 : 2020. 1. 1. ~ 12. 15.
- 신청장소 :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메일([js714900@korea.kr](mailto:js714900@korea.kr)) 접수
  - ※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첨부
- 신청자격
  -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자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
    - ※ 단,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 지원대상자는 제외
- 지원내용
  - 1인 480,000원 친환경 농·축산물, 유기식품 등 (자부담 : 96,000원)
    - 친환경농산물 : 애호박, 마늘, 대파, 토마토, 블루베리, 껌잎 등
    - 친환경축산물 : 유기농달걀 등
    - 친환경유기식품 : 이유식(쌀, 단호박), 유기농 김 등
- 지원절차
  - 농협몰([www.nonghyupmall.com](http://www.nonghyupmall.com))가입
  - 신청서 제출 → 확정 및 자부담 입금계좌 문자 발송
  - 자부담 96,000원 해당계좌 입금 후 농협몰 포인트로 480,000원 입금
  - ※ 택배 배송은 주 1회이며, 친환경농산물 특성상 시기별 제품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농업축산과 또는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.

문의처 ☎ 390-8413 (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)

##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

### □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

-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축산악취 저감 및 고품질 퇴비화로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
- 시행일시 : 2020. 3. 25.부터
- 대 상 : 축사면적(배출시설)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 
(소 100㎡, 돼지 50㎡, 가금 200㎡ 이상)
- 시행내용
  -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(가축분뇨법 시행령 12조의2 별표3)

항 목	축 종	기 준	부 숙 도	비고
부숙도	모든가축	1,500㎡ 미만	부숙중기	
		1,500㎡ 이상	부숙후기·부숙완료	

-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(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)

항 목	신고규모	허가규모	비고
검사횟수	연 1회	6개월에 1회	
시설규모	•한우·젖소 100~900㎡ 미만 •양돈 50~1,000㎡ 미만 •가금 200~3,000㎡ 미만	•한우(90두)·젖소(70두) 900㎡ 이상 •양돈(1,200두) 1,000㎡ 이상 •가금 3,000㎡ 이상	

- 과태료 부과(가축분뇨법 제53조)

항 목	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		퇴·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	
	허가	신고	허가	신고
1차	50만원	30만원	100만원	50만원
2차	70만원	50만원	150만원	70만원
3차	100만원	70만원	200만원	100만원

문의처 ☎ 390-8421 (농업축산과 축산팀)

## 동물 학대·방치행위 금지 및 사육 관리 철저

### □ 동물 학대·방치행위 금지 및 사육 관리 철저

-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환경 제공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,
- 우리군 관내에서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.
- 동물에게 해로운 잔반을 먹이거나 오염된 물을 제공하여 건강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영양실조 상태로 방치하는 형태의 부적절한 영양공급이나,
- 발이 빠지는 뜰장, 좁은 공간에서 과밀 사육 등 적절치 않은 사육 환경에서 키우는 형태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.
-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,
- 위의 사항을 위반 시 동물보호법 및 관련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### □ 동물 사육·관리에 관한 규정

-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·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 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
-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,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,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조치 명령 위반 시  
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문의처 ☎ 390-8425 (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)

## 2020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

### □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개요

○ 보유기종 : 88종 845대

구 분	보유기종	위 치	연 락 처	비 고
본 소	85종 444대	장성읍 단풍로 220	390-8513~5	농업기술센터 內
서부분소	70종 252대	삼계면 영장로 1620-2	390-7191~4	
북부분소	56종 149대	북이면 방장로 950-10	390-9795~7	

○ 이용대상 : 주소 또는 경작지가 장성군에 있는 농업인

○ 임대기간 : 1~3일(1회 연장가능) / 일단위로 계산

○ 운영시간 : 동절기(11~2월) 08:00 ~ 17:00 / 하절기(3~10월) 08:00 ~ 19:00

※ 토요일 운영 : 본소(1~12월), 서부·북부(4~6월, 10~11월)

### □ 코로나19 관련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 연장

○ 감면기간 : 3. 1. ~ 10. 31.(8개월) / **3개월 연장**

※ 당 초 : 3. 1. ~ 7. 31.(5개월)

○ 감면내용 : 100%

○ 대 상 : 장성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

○ 운영방법 : 주간 내(일~토요일) 1일 농가 1대(동일기종) 기준

※ 3일 임대시 1일 100%감면 2일은 임대료 부과

### □ 임대농기계 운반대행(택배) 서비스

○ 운영기간 : 연중(공휴일, 일요일제외)

○ 신청대상 : 장성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(관내 경작지에 한함)

○ 신청기종 : 전기종(퇴비살포기, 사각결속기 제외)

○ 택배신청 : 임대농기계 사용 3일전 / 작업장소 인근 차량진입 가능 지역

○ 지원내용 : 택배 왕복요금의 70%(자부담 30%) / 농기계임대료 별도

문의처 ☎ 390-8513~5 (농촌활력과 농업기계팀)

# 코로나19 예방



# 물놀이 안전수칙



##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



가족단위의 소규모로 방문하고, 단체방문 자제하기



텐트, 돛자리, 그늘막 등은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어 설치하기



물놀이 후 물밖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



수건, 수영복, 수경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

## 물놀이 안전수칙



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기



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셔요!  
다리→팔→얼굴→가슴



수영능력 과신 **No!**  
아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**YES!**



건강상태가 좋지않을 때, 음주 후는 **수영 NO**  
음식을 섭취는 **금지** 하기



대한민국정부

2020. 07. 17



주의!

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!

# 잘못된 마스크 착용, 안돼요!

코와 입을 통해  
자신과 타인에게  
바이러스가  
다 들어가요!



① 코가 노출되는  
마스크 착용



② 턱에 걸치는  
마스크 착용



③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



군민과 함께 매력있는  
Yellow<sup>City</sup> 장성군